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1호	250
나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1호	120 다만,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,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.
다.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2호	5,000
라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2호	2,500 다만, 임직원의 경우에는 1,000만 원으로 한다.
마. 법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3호	5,000
바. 법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4항제1호	600
사. 법인인 자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4호	5,000
아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4호	2,500 다만, 임직원의 경우

		에는 1,000만 원으로 한다.
자. 법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4호의2	5,000
차. 법인인 자가 법 제19조제3항·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5호	5,000
카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5호	500
타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9조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5호	2,500
파. 법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제1항제5호의2	3,000
하.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5호의3	3,000
거. 법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6호	5,000
너. 법 제49조의2제3항·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·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7호	3,000
더. 법인인 자가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10호	3,000
러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10호	1,500
며. 삭제 <2021. 3. 23.>		
버. 삭제 <2021. 3. 23.>		
서. 법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	법 제72조제2항	1,800
어. 법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3항	1,000
저. 법인인 자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, 관계인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10호의3	5,000
쳐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, 관계인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10호의3	2,500 다만, 임직원의 경우에는 1,000

		만 원 으 로 한다.
커.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(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포함한다)	법 제72조제1항 제10호의4	3,000
터.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 제11호	3,000
퍼. 법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12호	3,000
허. 법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12호	1,500
고.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2조제1항제13호	5,000